

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(박은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1018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12.

발 의 자 : 박은경, 한명훈, 송바우나,
황은화, 유재수, 설호영,
최찬규, 이지화, 현옥순,
김유숙, 한갑수, 선현우,
박은경 의원(13인)

1. 제안이유

-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,
-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지정게시대 우선 게시 (안 제4조)
-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(안 제6조 ~ 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현수막”이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.
2. “친환경 소재”란 생분해, 산화생분해,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,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.
3. “재활용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)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안산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하여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

있다.

1.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
2.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
3.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·교육 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박은경 의원 대표발의